〈발표1〉

가해자 특성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

배진희(예수대) 정미순(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Ⅰ. 연구의 필요성

인구고령화,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 가치관 및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사회적 지원 부족 등은 노인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노인학대 발생이다. 노인학대를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이해와 관련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노인학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은 노인학대의 실태 및 심각성, 학대가 피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초로 노인학대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학대 가해자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노인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 구성원이고, 학대 신고 후 상담 등을 진행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지만 많은 사례들이 노인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기 보다는 그들과 다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게 된다(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07)1). 이러한 실태는 노인학대 완화 및 해소를 위해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 인구고령화,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노인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가족에게 부양 책임을 전담시켜 가해자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김미혜 외, 2004). 또한 노인학대는 성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피해 노인과 학대 행위자를 분명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가족에 의하여 발생한 노인학대의 경우 피해 노인이 학대 행위자에게 발생할 불이익을 생각하여 학대를 은폐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적 접근이 아닌 가해자를 위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07). 그러나 2006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제공 현황을 보면 피해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21,487회인 반면 학대 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2,160회에 그치고 있다.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배우자 학대나 아동학대 영역에서는 가해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개입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노인학대의 경우 가해자를 위한 개입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

^{1) 2006}년 학대 현황보고서의 조치 결과를 보면 피해노인 분리(19.3%), 학대자 분리(5.9%), 피해노인이나 행위자 사망 (18.4%)을 제외하고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07).

는 연구조차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권금주, 2007).

일부 연구(한은주·김태현, 2000; 송현애·정길양, 2001; 권중돈, 2004)를 통해 가족관련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기는 했으나 주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보다는 자녀와의 관계나 유대감, 접촉도 정도, 부양기대감 등을 살펴보았다. 나용선(2005), 권금주(2007)는 노인학대 가해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가족의 역사적 맥락과 가족성원 간의 관계의 역동성 측면을 고려한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는 의의가 있었으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한편, 한 연구(이성희·한은주, 1998)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혼자녀의 특성이 학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기혼 자녀를 대상으로 할 경우 가해자 특성에 대한 정보 수집에는 적절하나 정확한 학대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해자 특성과학대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일부 있기는 하나 가해자 관련 변인이 매우 한정적으로 검토되었다(고보선·허준수, 2005; 이연호, 2003). 한편 박미은(2004)는 가해자 관련 요인을 따로 분류하여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학대의 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가해자 특성과 전체 학대 정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경험하는 학대 유형이 다르고, 학대의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해자 특성이 노인의 신체적 학대, 언어·정서적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예방 및 개입 방안 등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1. 노인학대에 관한 선행 연구

노인학대는 다른 유형의 가정폭력 즉 아동학대나 배우자 학대에 비해 뒤늦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연구의 경향을 살펴봐도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는 다른 유형의 학대 관련 연구보다 적고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시기도 가장 늦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사회복지학뿐만 아니라가정학, 사회학, 간호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노인학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연구(최해경, 1993; 박봉길, 2000; 이인수·이용환, 2000; 박진희·윤가현, 2002),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최선화·공미혜·한동희,1998; 서윤, 1998; 2000; 조애저 외, 1999; 국가인권위원회, 2002; 김한곤·김지아, 2006), 노인학대의 결과 및 노인들의 대응에 관한 연구(이영숙, 1997; 김미경, 1998; 김재엽·김희수, 2003; 고보선·유용식, 2004, 고보선·허준수, 2005; 이연호, 2002; 2003)가 있다. 그리고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 있다(김재엽, 1998; 이성희·한은주, 1998; 한은주, 2000; 한은주·김태현, 2000; 송현애·전길양, 2001; 김승용, 2002; 김창기·박일연, 2003; 김한곤, 2003; 박미은, 2004; 권중돈, 2004). 최근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해 노인학대에 대한 심충적 이해를 도모하고자한 연구들이(나용선, 2004; 권금주, 2007) 이루어졌다. 이런 연구들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확산의필요성, 우리 나라 노인 학대 실태, 학대의 영향, 학대 관련 요인, 학대 현상에 대한 본질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의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가해자에 대한 개입과 개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가해자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2.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가해자 관련 요인

첫째, 가해자의 피해 노인과의 관계가 학대 양상과 관련이 있다. 노인 학대는 대개 노인에 대한 부양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배우자 등 가족 성원에 의해 일어난다 (Paveza et al, 1992; 조애저 등, 1999; 국가인권위원회, 2002;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07). 그러나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가해자가 피해노인의 배우자인지 자녀인지에 따라 학대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각 유형별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두 번째 관련 요인은 가해자의 배우자 유무이다. 노인학대 실태 보고서(2007)에 의하면 가해자 중 26.4%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은 했어도 이혼, 별거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했으나 배우자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면 노인은 이 사실을 용납하기 어렵고 자녀도 스트레스를 받아 이는 곧 갈등관계로 진전되기 쉬우며 그 갈등상황에서 학대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배우자가 없이 노인과 동거하면서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훨씬 부담이 크고, 또한 결혼을 못한 상황이라면 노인이 걸림돌이 된다고 봄으로써 이로 인한 부담이 노인학대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의 배우자 유무가 여러 유형의 학대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가해자 경제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가해자의 경제적 상태가 학대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부양으로 인한 경제 부담이나 실업 또는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 등 가해자가 가진 경제적 압박으로 노인부양 자체가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좌절감이 노인 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ch & Pillemer, 1995; 한동희, 1996; 이성희·한은주, 1998).

넷째, 가해자의 취업상태이다. 학대자들은 실직·실업상태에 있거나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Douglass et al, 1980; 한동희 1996; 한은주, 2000). 미취업은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노인 학대 유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신질환 및 알코올 문제를 들 수 있다. 외국 선행연구에서 가해자가 무절제학 충동적인 성격일 경우, 노인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알콜 중독, 마약 중독 등이 약물 중독, 정서장애, 정신장애 문제가 있을 경우 노인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학대자는 다양한 심리적 고통이나 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정신병력이나 음주문제 혹은 약물 남용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Korsberg, 1988; Rathbone-McCuan, 1980; Bennett, 1990; Bookin & Dunkle, 1985; Pillemer & Finkelhor, 1988; Quinn & Tomita, 1997; Lachs & Pillemer, 1995; Mcdonald, 1996; Wolf, 1996).

마지막으로 가해자의 피학대 경험 및 학대 목격 경험을 들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폭력행위는 하나의 학습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폭력이란 학습된 행동으로써 노인 자신이 이전에 가해자 혹은 희생자의 경험을 가졌고 이것이 가족학대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다(Pillemer, 1986; Mcdonald, 1996).

2) 피해 노인 관련 요인

먼저 평소 가해자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학대 받는 노인과 가해자들은 오랫동안 감정적 대립관

계가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한동희, 1996), 과거에 좋지 못했던 세대간의 관계는 현재의 긴밀한 가족유대를 어렵게 하고, 이러한 낮은 관계의 질이 학대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Kosberg, 1988).

두 번째 노인학대 상황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피해 노인과 가해자의 동거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피해노인이 가해자와 동거하는 경우 노인학대 발생율이 높다고 보고 되고 있으나 동거 형태에 따라 학대 발생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셋째, 노인의 경제 상태가 학대 발생의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일부 연구(이성희·한은주, 1998; 서윤, 2000)에서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양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학대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반면 이와 상반된 결과를 밝힌 연구(Pillemer, 1985; 박미은 2004에서 재인용)가 있다. 이런 결과는 경제상태가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대에 영향을 미치고, 학대의 유형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노인 성별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여성 노인이 학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Kosberg, 1988; 2001; 한은주·김태현, 2000; 이연호, 2002). 하지만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이 학대 피해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별과 노인학대와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대 유발요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노인의 의존성이다. 많은 노인학대 관련 연구에서 신체적, 인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장애를 겪고 있지 않은 노인보다 더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다. 이상 선행연구에 보고 된 노인학대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런 선행연구 검토 내용을 기초로 피해노인관련 요인이나 가족관련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해자 관련 요인이 유형별 학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국내 노인학대 연구의 경우 노인학대사례에 접근이 어려워 실제 학대를 경험한 피해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 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연구의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이 특정 지역과 일부계층에 한정되어 있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전국 가족에 의한 학대를 경험한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노인보호전문기관 17개소에 신고 된 피학대 노인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학대를 경험한 노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 설문지 개발 후 학대 경험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분석결과를 기초로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5년 8월에서 10월까지 약 3개월에 거쳐 이루어졌다. 조사는 연구자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사회복지전공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설문 문항을 읽어 주고 기록하는 면접법에 의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총 434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주요 변수의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유형별 학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미혜, 이선희(1998)가 개발하고 이연호(2002)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체적 학대 10문항, 언어·정서적 학대 14문항, 경제적 학대 6문항, 방임 8문항,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개발당시 신뢰도(Cronbach's a)는 .94로 나타났다. 노인의 의존성

을 측정하기 위하여 권중돈(1994), 김선희(1996)의 연구를 기초로 총 10문항을 발췌 사용하였다. 그 내용은 일상생활동작능력(ADL)수행상의 의존도 측정을 위한 6문항, 도구적 일상생활동작능력 (IADL)수행상의 의존도 측정을 위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자에 대한 노인의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이들의 신뢰도(Cronbach's a)는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피학대노인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부양기대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은주(2000)가 Seelbach(1978)의 "Realizations of Filial Responsibility (RFR)" 19개 항목 중 5문항을 발췌,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도구는 총 5문항으로,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3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고, 가해자의 특성이 각 유형별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학대를 경험한 65세 이상 노인 434명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1>과 같다.

 변 수		빈도(비율)	변 수		빈도(비율)	
성 별	남 성	181(41.7)	결혼상태	배우자있음	135 (31.1)	
	여 성	253(58.3)		배우자없음	299 (68.9)	
교육수준	무 학	197(45.4)	동거형태	독거	109(25.1)	
	초졸	130(30.0)		노인부부	77(17.7)	
	중졸	47(10.8)		자녀동거	224(51.6)	
	고졸	39(9.0)		조손가구	7(1.6)	
	대졸이상	21(4.8)		기타	17(3.9)	
경제상태 (주관적)	매우 나쁘다	118(27.3)	건강상태 - (주관적)	매우 나쁘다	103(23.7)	
	약간 나쁘다	123(28.4)		약간 나쁘다	180(41.5)	
	보통이다	141(32.6)		보통이다	83(19.1)	
	좋은 편이다	41(9.5)		좋은 편이다	52(12.0)	
	매우 좋다	10(2.3)		매우 좋다	16(3.7)	
평 균 연 령		76.77(sd=7.17) 최소값 65, 최대값 : 96				

<표-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가해자 특성이 유형별 학대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 특성 유형별 노인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2>와 같다. 먼저 신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한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1.1644, p<.001). 그리고 회귀모형이 신체적 학대 전

체 변량의 35.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의 관계(b=-.706, p<.05), 학대 목격 경험 (b=1.021, p<.001)이 신체적 학대 정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가해자가 자녀일 때보다 배우자인 경우 신체적 학대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해자가과거 학대 목격 경험이 있는 경우 신체적 정도가 더 심각함을 의미한다. 통제 변수 중 평소 주가해자와의 관계(b=-.491 p<.001), 동거형태(b=-.571, p<.001), 피해 노인의 성별(b=-.702, p<.001)이 학대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 가해자와 피해자와 관계가 나쁠수록, 독거노인이 아닌 경우, 피해 노인이 여성인 경우 더 심각한 신체 학대 양상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동거형태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가해자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신체적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2002)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표-2> 가해자 특성이 유형별 학대에 미치는 영향

इ क्मं र			신체적 학대	언어·정서적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독립변수			B(β)	Β(β)	Β(β)	Β(β)
가해자 특성	피해자와의 관계 ¹⁾		706(133)*	704(071)	.222(.052)	.728(.131)*
	배우자 유무 ²⁾		273(091)	646(115)	400(167)*	.342(.109)
	경제상태 ³⁾		097(042)	.889(.208)***	028(015)	.287(.120)
	취업상태 ⁴⁾		083(030)	270(053)	.173(.080)	.041(.015)
	정신질환유무 ⁵⁾		021(004)	.704(.073)	123(030)	.051(.009)
	알코올 문제 ⁶⁾		.267(.090)	.648(.118)*	.243(.103)	221(072)
	피학대 경험 ⁷⁾		533(165)	188(031)	.594(.231)*	.079(.024)
	학대목격경험 ⁸⁾		1.021(.320)***	.436(.073)	438(172)	012(003)
통제변수	평소 주가해자와의 관계 ⁹⁾		491(327)***	768(275)***	008(007)	200(128)*
	동거형태 ¹⁰⁾		571(190)***	-1.432(256)***	001(001)	.311(.100)
	노인의 경제상태 ¹¹⁾		034(026)	219(090)	.050(.048)	233(171)**
	노인의 성별 ¹²⁾		702(260)***	834(166)**	.058(.027)	116(041)
	노인의	일상적생활능력제한	026(127)	.010(.025)	.001(.005)	.014(.065)
	의존성	도구적생활능력제한	.014(.050)	.086(.166)	044(200)	.102(.354)**
	부양기대감		.003(.010)	.025(.041)	.001(.006)	.042(.124)*
상 수			3.785***	7.850***	.893	.063
R ²			.389	.331	.101	.307
Adjusted R ²			.354	.292	.049	.268
F 값			11.164***	8.656***	1.964*	7.782***

^{*} p< .05 ** p< .01 *** p< .001

- 1) 가해자가 피해노인의 배우자인 경우를 0, 자녀인 경우(손자녀 포함)를 1로 한 더미변수임
- 2) 배우자가 없는 경우 0, 배우자가 있는 경우 1로 한 더미변수임
- 3) 11) 경제상태는 서열변수로 측정했고,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음을 의미함.
- 4) 미취업 상태를 0, 취업상태를 1로 한 더미변수임
- 5) 6) 7) 8) 정신질환, 알코올 문제, 피학대 경험, 학대목격경험이 없는 경우 0, 있는 경우를 1로 한 더미변수임
- 9) 서열변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평소 가해자와 피해 노인의 관계가 좋았음을 의미함.
- 10) 비독거노인을 0, 독거노인을 1로 한 더미변수임
- 12) 여성을 0, 남성을 1로 한 더미변수임

다음 언어·정서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한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8.850, p<.001). 본 회귀모형은 노인의 언어·정서적 학대에 대해 29.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특성 중 경제상태(b=.889, p<.001), 알코올 문제(b=.648, p<.05)가 언어 정서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해자의 경제 상태가 양호할수록, 문제 음주 양상을 보일 경우 언어·정서적 학대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가해자의 음주 문제가 학대 및 노인의 대처에 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박미은, 2004; 고보선·허준수, 2005)와 일치하고 있다. 지주예(2002)의 아동학대 가해부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가해부모의 음주 횟수와 음주량이 아동학대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 가해자의 음주문제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났다. 통제 변수의 경우 평소 관계가 나쁠수록, 독거노인이 아닌 경우, 피해 노인이 여성이 경우 언어·정서적 학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제적 학대의 경우 구성된 연구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F=1.964, p<.05)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adjusted R2 = .049). 주가해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b=-.400, p<.05), 과거 피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b=.594, p<.05)경제적 학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은(2004) 연구에서 가해자의 아동기 피학대 경험이 학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마지막 방임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F=7.782, p<.001)), 회귀모형 이 전체 변량의 26.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특성 중 피해자와의 관계가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보다 자녀인 경우 노인을 방임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노인의 경제 상태(b=.233, p<.01)와 노인의 도구적 생활능력제한(b=.102, p<.01), 부양기대감(b=.042, p<.05)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가 열악할수록, 의존성이 높을수록, 부양기대감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방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및 제언

지금까지 노인학대에 대한 접근은 피해 노인을 중심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노인학대 문제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포함한 가족 중심의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접근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전국의 피학대 노인 434명으로 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앞서 제시한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 가해자가 자녀일 때보다 배우자 인 경우,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신체적 학대 정도가 더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노년기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이전 결혼 생활에서도 있어 왔던 배우자 폭력이 노년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고려해볼 때 노인학대예방은 노년기 이전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노인대상 학대예방교육 시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대처 방법뿐만 아니라 노인이 노인학대 가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자녀가 주가해자인 경우 방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존성이 높고 경제 상태가 나쁜 노인일수록 방임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 방임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방임도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학대의 한 유형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방임사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 있는 운영,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방임의 위험에 처한 노인 보호와 가해자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의 피학대 경험 및 폭력 목격 경험이 신체학대 및 경제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랜 가족의 생활이나 관계 속에서 쌓여진 생활사가 학대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 그 원인이 매우 복잡하게 엉켜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체계를 '피해노인만'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가족과 노인을 통합시키는 방향으로의 개입, 즉 가족 전체를 클라이언트 체계로 규정하는 관점에서 좀더 포괄적이고 전문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노인학대전문상담원과정" 100시간 정도의 교육이외 다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노인학대 담당 하는 실무자들에게 좀더 차별화 된 수준과 다양한 전문내용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가족치료와 상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가족상담이나 치료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슈퍼비젼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권중돈, 2007).

또한 가해자의 알코올 문제와 노인의 경제상태가 학대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음주 문제해결과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개입하기엔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공공기관, 병원, 노인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복지서비스기관, 보건기관과의 연계 및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은 사후관리에도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함의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가족 및 가해자의 상담을 의무화 하도록 강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학대로 심화된 가족 간의 갈등 및 문제요소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 노인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 및 관련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개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인학대 상담업무 현황 보고서(2007)에 의하면 가족상담이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17%이고, 가족 상담이 필요함에도 가족이 거부하여 가족상담을 하지 못하여 미해결 상태로 종결한 사례가 11%에 이르고 있다. 이는 노인보호전문 기관이 가족이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가족 상담의 강제권을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노인학대에 관한 법개정을 통하여 학대행위자를 포함한 피해노인 관련가족에 대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2007년 말 현재 18개 소가 설치되어 있어 경기도와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도에서는 한 기관이 광역시·도 전체를 담당하고 있어 관할지역이 넓고 이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각 센터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5~6명의 직원이 24시간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행정업무, 홍보, 예방사업, 피해노인·가해자 상담 및 치료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직원의 과중한 업무는 잦은 이직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고 결국 그 피해는 클라이언트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